

현행					개정안				
[별표]중					[별표]중				
구명	동명	동장 정수	동사무소 위 치	관할구역	구명	동명	동장 정수	동사무소 위 치	관할구역
소사구	괴 안 동	(생략)	(생략)	(생략)	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
	역곡 3동	(생략)	(생략)	(생략)	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
	송내 1동	(생략)	(생략)	(생략)	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
	송내 2동	(생략)	(생략)	(생략)	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
오정구	(생략)	(생략)	(생략)	(생략)	오정구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	(현행과같음)

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93년 11월 9일
- 나. 제안자 : 부 천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93년 11월 9일
- 라. 상정일자 : 93년 11월 16일(제1차 총무위원 상정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사회진흥과장 이효선)

가. 제안이유

- 1993. 1. 1. 청소년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른 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

나. 주요골자

- 법 제정 내용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
- " 위원회 변경

○ 문구 변경

○ 위원회 위원 중 교육장, 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.

다. 법적근거

○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- 제14조 규정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 음

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04
의 결	제24회
년 월 일	(93.11.20)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9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1993 1. 1. 청소년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른 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개정

2. 주요골자

- 법 제정 내용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
- " " 위원수 변경
- " " 문구 변경
- 위원회 위원 중 교육장, 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.

3. 법적근거

-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~제14조 규정

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“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천시지방청 소년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제1항 중 “15인 이상 20인”을 “15인”으로, 동조 제2항 중 “위원회에서”를 “위원중에서”로,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위원은 시 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, 청소년 단체, 언론 계, 학계, 종교계,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존경받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3조 제4항 중 “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”를 “도지방청소년위원회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”를 “청소년실무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20인”을 “15인”으로, 동조 제2항 중 “가정복지과장”을 “사회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청소년육성법”을 “청소년기본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
조례명 : 부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	조례명 : 부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
제1조 (목적)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부천시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.....	제1조 (목적)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부천시지방 청소년위원회.....
제2조 (위원회 구성) ①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하되 ③ 시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, 청소년단체,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주민들로 부터 존경받는	제2조 (위원회 구성) 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하되 ③ 시 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당연 직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, 청소년단체, 사회단체의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
제3조 (운영) ④ 위원회는 중앙청소년육성 위원회에서 결정 필요한 경우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	제3조 (운영) ④ 위원회는 도지방청소년위원 회에서 결정 필요한 경우 도지방 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
제4조(실무위원회 설치) 청소년육성 지방실무위원회.....	제4조(실무위원회 설치) 청소년실무 위원회
제5조 (실무위원회 구성) ① 20인 이내로 ② 가정복지과장이	제5조 (실무위원회 구성) ① 15인 이내로 ② 사회진흥과장이
제10조 (준용) 청소년육성법과	제10조 (준용) 청소년기본법과